2024. 3. 21. (목) 10:00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변경)수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본 청취안은 2024년 3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1조에 따라 2024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2020 남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이후 남양주시의 도시환경 및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응하여 남양주시의 특성을 반영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총 8개)

- 신규지정(3개소) : 팔야지구, 내각지구, 용정지구
- 기존구역계변경(3개소) : 퇴계원지구, 장현지구, 다산지구
- 유지(2개소 변경사항없음) : 금곡지구, 화도지구

○ 남양주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총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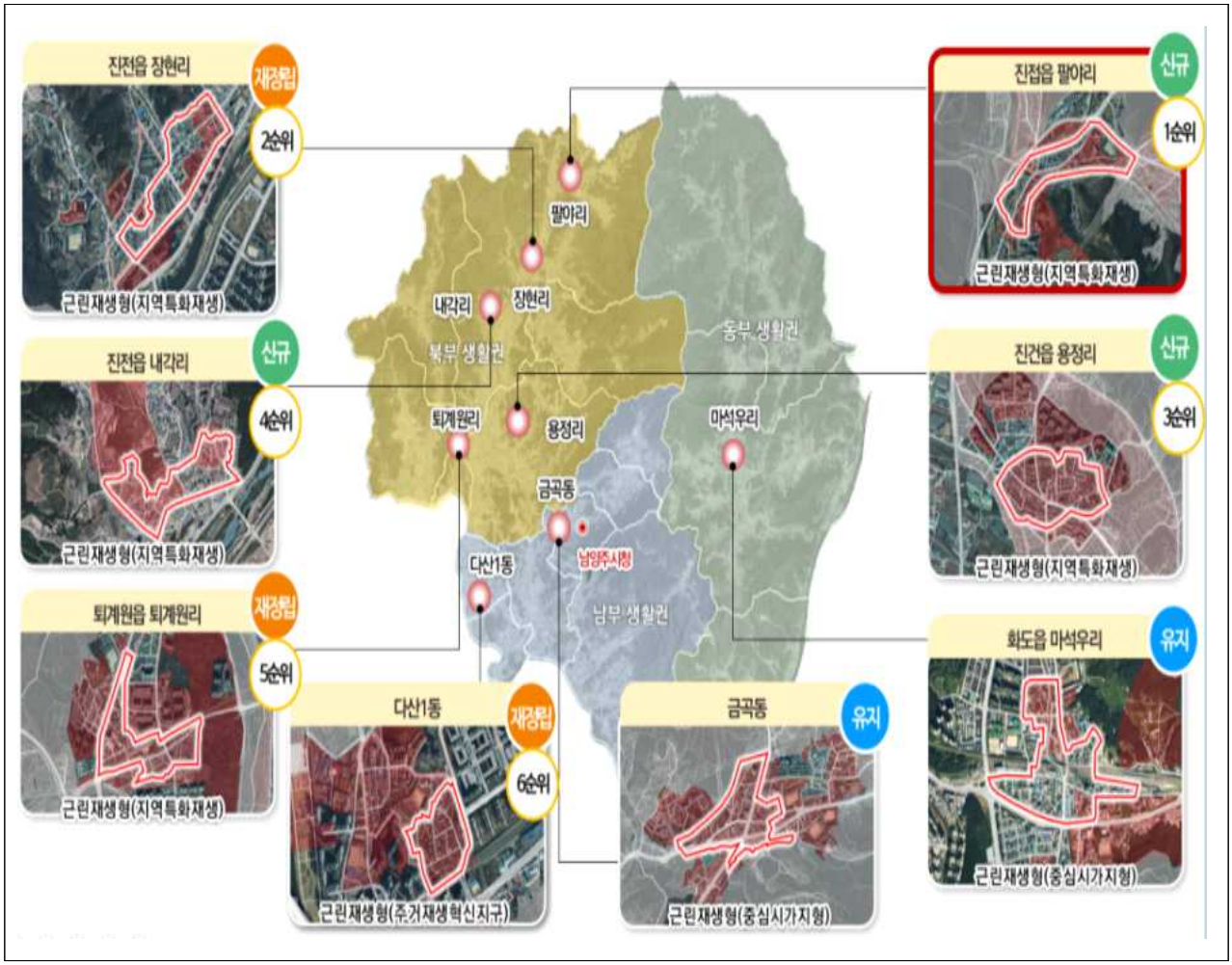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제15조

○ 그간 추진현황

- 2021. 2. 25. :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 2023. 6. 13. :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 및 진접읍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24. 1. :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식 조사

- 2024. 2. 6. :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수립 주민공청회
- 2024. 3. : 남양주시의회 의견 청취

○ 향후 추진계획

- 2024. 4. :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4. 5. :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 승인

5. 검토의견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공간적 활력 회복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지원 등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금번 추진된 변경계획에서는 변화된 여건과 도시재생의 시급성, 지역 잠재력, 상위계획 부합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파급효과 클 것으로 예상되는 8개의 지역을 선정한 사항임

○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성장과 양적 팽창, 지역 간 불균형의 가속화 등으로 본 계획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선정된 각 지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발굴하고 이를 활용하여 완성도 높은 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1 관련법령[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려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 단위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이 우선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연계·집중됨으로써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②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